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1권
2009년 2월 pp. 237~266

논문접수일 2009.01.29
논문심사일 2009.02.10
심사완료일 2009.02.23

한·미 무역구제제도 및 KORUS-FTA 제10장에 대한 평가 및 유의점에 관한 고찰

오현석*

-
- I. 서 론
 - II. 무역구제제도와 FTA
 - III. 한·미 무역구제제도의 비교
 - IV. 한·미 FTA 무역구제조항의 구성과 평가
 - 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은 회원국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¹⁾ 연혁에 비추어 초기 FTA의 협상대상은 물품에 대한 관세

* 영진사이버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1) FTA는 특정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이동에 대한 국가간 제반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그 대상이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²⁾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이하 'MFN') 및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bilateralism) 및 지역주의(regionalism)적인 소위 특혜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FTA 회원국간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FTA 회원국간에는 물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비회원국 물품은 WTO상의 수출·입 제한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³⁾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가 부여될 수 있는 WTO 협정상 근거는 '1994년 GATT 제24조 및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⁴⁾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 2항의 규정이다.⁵⁾

통계지표에 있어 2008년 11월 현재 GATT, WTO에 발효 중인 전 세계 RTA는 총 211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이 같은 환경하에서 우리나라라는 FTA 역외국으로서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며,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이하 'RTA')의 일편으로서, 이를테면 합의에 의한 인위적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regionalism)의 원시적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특성을 갖는다. 관련 용어의 해석에 관한 상세는 구갑우,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p.429,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p.867, 김명아,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 대응 방안", 「외법논집」,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p.177-178. 등을 참조.

- 2) 통계지표는 <http://www.wto.org>에서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2008」을 참조. 이하 인용하는 웹사이트[URL]는 본 고 제 출시점 현재 웹상에 현시(display)되어 있는 것으로 편의상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한다.
- 3) Devuyst, Y. and Serdarevic A.,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 Bridging the constitutional credibility gap",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l Law, Vol. 18, 2007. pp.8-10.
- 4) www.marxists.org/history/capitalism/gatt/ch24.htm.
- 5) www.worldtradelaw.net/uragreements/gats.pdf.
- 6) WTO, 2008, 전개자료.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 전반의 통상환경을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국가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⁷⁾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협정 타결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칠레(2004. 04), 싱가포르(2006. 03), EFTA(2006. 09), ASEAN(2007. 06 상품·서비스협정) 등과 FTA를 완료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서 미국과의 FTA마저도 타결하였고(2007. 04), 현재 EU, ASEAN(서비스 및 투자) 및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의 협상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고는 이 같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미간 무역구제제도 및 무역구제에 관한 ‘한·미 FTA 협정문’(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이하 ‘KORUS-FTA’) 제10장을 중심으로 주요 사안 내지 당해 조문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무역구제에 대한 양국의 제도 및 KORUS-FTA를 올바로 이해하여 그 대응수준을 순기능적 차원에서 제고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후속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무역구제제도와 FTA

1. 무역구제제도와 비관세 무역장벽과의 관련성

GATT와 WTO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소위 원산지규정, 통관규정,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⁸⁾ 긴급수입제한(safeguard), 반덤핑(antidumping), 보조금에 의한 상계관세부

7) 김현종, “왜 FTA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pp.4-5.

8) 대부분 국가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 제도를 수립해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마다 그 기술·표준제도가 상이하다. 그런데 기술 및 표준규정이 수입품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술 및

과(countervailing duties) 등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은 각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⁹⁾

이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의 증가는 다자주의 협상을 통한 관세인하에 연이어 발생되었던 까닭에, 국제무역규범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무역확대 효과를 현저히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각국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¹⁰⁾

한편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조치 등과 같은 무역구제(trade remedies)에 있어서는 FTA의 확대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동 제도가 각국이 WTO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국 입장 차이에 의한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¹¹⁾

요컨대 FTA가 내재하고 있는 역외국에 대한 배타성은 무역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당해 배타성에 바탕을 둔 차별적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역외국의 피해 및 개별 FTA마다 상이한 무역구제조치의 요건과 조치유형 등은 다자간 규범과의 조화라는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곧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는 FTA 당사국간 무역구제제도가 GATT 제24조의 제한적 무역구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WTO와 FTA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이 같은 특징 때문이다.

결국 무역구제제도 중에서도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는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FTA와 관련하여 상호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

표준조치 규정과의 적합성 판정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이 통례이다.

9) 김명아, 전개논문, p.178.

10) 김관원, “반덤핑 폐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제12집, 한국외국어대학 교법학연구소, 2002. p.338.

11) 무역구제제도는 덤프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며,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수단이다.

치는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조치나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1) 특징 및 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경쟁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구제제도이다. 통상 수입제한방법은 수입물 품 수량규제(수입쿼터·수출자율규제), 수입가격규제(관세인상·가격감시제·최소가격설정), 행정규제(수입허가·통관절차·수입감시제도) 등이 있다.

동 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수입제한을 통하여 단순히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당해 수입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산업이 국제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게 하여 모름지기 국제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는 그간 적용상 명료성과 구체성이 결여로 당사국의 자의적 판단과 적용이 빈번한 상황이었던 바,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동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남용케 하는 계기가 되어 그 결과 현재 세계무역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다.

대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대상범위가 다자간 조치(global measures), 양자간 조치(bilateral measures), 지역적 조치(regional measures)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경우 다자간 조치는 모든 수입국을 대상으로 동 조치를 발동하는 것으로 WTO의 MFN 원칙에 부합한다. 양자간 조치는 특정국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로서 무역분쟁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 발동요건·사전협의·보상수준 등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규율한다. 지역적 조치는 다자간 및 양자간 조치 이외의 모든 경우로서 수입국 또는 수출국 일부에 적용된다.

실제로 FTA에서는 대부분 WTO 협정과 유사한 다자간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양자간 조치 또는 지역적 조치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¹²⁾

2)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제19조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¹³⁾ 당해 규정은 동경라운드 이후 다자주의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되다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창설과 동시에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WTO agreement on safeguards) 체결로 다자주의 차원에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WTO 협정상 수입국이 동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 위협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증가는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 증가를 포함하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수입 증가량·시장점유율·판매량·생산량·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 협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만 인정되고, 만약 동 조치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¹⁵⁾는 반드시 관세인상의 방법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 당사국은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을 통한 수입제한과 산업구조정에 대한 지원조치에 임하게 된다.

12) 이충배 외, “동북아지역 국가의 무역구제제도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5, pp.144-156.

13) www.marxists.org/history/capitalism/gatt/ch19.htm.

14) GATT 제19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입의 증가가 협정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다.

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safeguards_01_e.htm#p.

15)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는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픽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별도상국이나 소규모의 무역국에 대한 예외조치에 대해서는 WTO 동 협정 제9조를 참조.

3. 반덤핑조치

1) 특징 및 유형

GATT 제6조는 덤플링(dumping)을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같은 덤플링행위는 개별국가의 경제에 피해를 주고 국제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반덤핑제도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요컨대 반덤핑조치는 보조금 상계조치와 함께 특정물품의 덤플링수출에 대응하여 이에 특별관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그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로서, 한편으로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적 관세조치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 내용은 우선 반덤핑조치는 차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구제수단으로서, 곧 특정국 내지 특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둘째 동 조치의 부담은 응당 수출국으로 전가되는데, 그 배경은 동 조치의 원인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수출국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출국으로부터의 항의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에 기인한다. 셋째 동 조치는 매우 큰 수입제한효과를 나타낸다. 곧 동 조치는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없는 까닭에, 후일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 후하여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넷째 동 조치는 관세부과가 용이한 편인데, 그 이유는 반덤핑관세가 여론상의 부담도 적고 그 부과방식도 용이하기 때문이다.¹⁶⁾

그렇지만 수입국에서 반덤핑조치에 의한 규제가 과도하게 사용된다면 오히려 수입을 제한하고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편으로 왜곡될 수 있다. 즉 덤플링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조치가 수입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면 자유로운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6)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p.154.

2) 다자간 반덤핑조치 규정

일반적으로 FTA는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다르게 다자주의 규범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유형에 있어서도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는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구별하는 것이 긴급수입제한조치처럼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는 WTO의 반덤핑과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의 목적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달리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FTA 당사국간에도 특수한 규정을 둘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WTO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한 예외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WTO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상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덤플수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그 우려 또는 국내산업 기반화립에 대한 실질적 지연이 존재하며, 국내산업의 피해가 당해 덤플수입으로 유발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덤플의 최종적 판정이 있기 이전인 경우에는 앞선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다른 한편 수출자의 적절하고 자발적 가격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나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하게 된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국은 덤플에 대하여 일정액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실제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FTA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하나는 긴급수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협상절차에서부터 대체로 다자주의 규범내용을 FTA에 충실히 반영하여 그 규율범위를 좁게 형성하고자 하는 접근방법과, 다른 하나는 이와는 달리 폭넓게 FTA 체결국 사이의 구체적 문제와 향후 당사국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부분까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규율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다.

4. 보조금 상계조치

1) 특징 및 유형

보조금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지원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고용안정·수출촉진·중소기업보호·첨단산업육성·환경문제의 해결·R&D 지원·지역개발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조금은 단순히 개별기업에 일정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달리 조세감면이나 금융상 우대조치와 같이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과 관련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과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으로 구분되는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¹⁷⁾은 국제무역상 규제측면에서 이를 허용보조금·조치가능보조금·금지보조금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는 수입국 입장에서 당해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조금만큼 상계한 관세를 부과하여 그 지급효과가 상쇄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제도 또한 반덤핑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를 내재한다.

한편 대부분 FTA에서는 반덤핑조치와 병행하여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반덤핑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해서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이 통례이다. 그러나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가 그 성격이 유사하고 FTA에서 유사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반덤핑규정과 다소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17) 「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4-scm.pdf」 .

2) 다자간 보조금 상계조치 규정

연혁에 비추어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는 GATT 설립 이후부터 국제적 차원에서 규율되었으나,¹⁸⁾ 보조금 자체의 복잡성과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각국은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정책을 이에 결부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동경라운드에서는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VI and XXIII)¹⁹⁾을 마련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는 상술한 WTO 협정이 마련되었다.

상계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보조금 성격에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²⁰⁾ WTO 보조금 상계조치 협정상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한 요건은 우선 이상과 같이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혜택으로 생산된 물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어야 하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특별히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인과관계의 요건은 반덤핑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반덤핑조치와 마찬가지로 상계조치에도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잠정적으로 계산된 보조금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나 유가증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정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III. 한·미 무역구제제도의 비교

1.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1) 법적 기반

우리나라는 FTA 정책을 추진하고 기 체결된 FTA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18) GATT 제16조(보조금) 및 제6조(상계관세제도).

19) 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gatt1994_e.htm.

20) 이 경우 특정성이란 보조금 수혜자격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설정치 않고 특정기업 내지 산업 또는 특정지역 산업이나 기업에만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혜택을 의미한다.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해 가고 있는 차제에 있다.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법률은 현행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다.²¹⁾

산업피해구제법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1년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제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WTO 협정에 근거하여 일원화 하고 있다.

둘째 동 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무역위원회의 구성과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곧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보정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 무역행위 해당여부의 판정기간을 명정하고, FTA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외에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여타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특히 FTA 체결상대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배제에 관하여,²²⁾ –곧 한·미간 FTA 체결에 따른 협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양자간 체결한 FTA에서 상대국에 대하여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위원회가 그 대상국가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심각한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

넷째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종전에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이 수출·입 경로의 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유입되더라도 동일한 조사·판정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그 제재가 가능하였던 바, 이에 누구든지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그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에 해당 여부를 확인·신청

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8933호).

22)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4항.

23) 산업피해구제법, 제14조의2항.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과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과의 동일성 여부 및 정당한 권리취득 여부를 기초로 당해 결과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료히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간략한 절차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으로 판정된 물품을 상거래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불공정 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2) 적용 유형

① 덤픽방지관세제도²⁴⁾

다자간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픽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당해 덤픽수입과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덤픽차액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덤픽수입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당해 덤픽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²⁵⁾

② 상계관세제도²⁶⁾

외국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품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보조금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외국에서 특정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

24) 산업피해구제법, 제23조., 관세법 제51조-제56조.

25) 사례로 현대중공업의 제소로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한 일본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에 대하여 5년간 4.5~10%의 덤픽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2005. 07. 20. 이하 사례의 제소과정 일자 및 효과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www.ktc.go.kr」 '무역구제성공사례' 참조).

26) 산업피해구제법, 제24조., 관세법, 제57조-제62조.

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²⁷⁾

③ 긴급수입제한조치²⁸⁾

외국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수입급증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수입 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⁹⁾

신청요건은 이상과 마찬가지로 특정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수입급증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³⁰⁾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의 저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있을 때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 신청요건은 불공정 무역행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³¹⁾

3) FTA 특별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FTA 특별법은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이나 FTA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FTA 특별법과 관련 국내법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 특별법을 통하여 FTA 정책의 성공

27) 하이닉스 반도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측에 의해 44.29%, EU로부터 34.8%의 상계관세조치를 받은 바 있다(2003. 08).

28) 산업피해구제법, 제3장.

29) 농협의 제소로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세율 인상 (60~285%) 및 수입수량 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1999. 09).

30) 산업피해구제법, 제2장.

31) 산업피해구제법 제6조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사례로 LG전자의 제소로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일본 마쓰시타의 PDP 특허권 침해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수입 및 국내 판매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한 바 있다(2004. 11). 기타의 경우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여 그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WTO에 제소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교역상대국정부와 이의 시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의할 수 있다(산업피해구제법, 제4장).

적 추진과 이행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의 법규를 보완하여 FTA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법은 주로 무역과 관련된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등인데, 이를 위시하여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구조조정법이나 투자 관련법, 물류 관련법,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규 등이 대표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FTA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국내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개편과 새로운 법규의 제정도 긴요한 상황이다.³²⁾

한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산재한 무역구제조치를 하나의 법규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곧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법적 근거를 일련의 통일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개별 법규가 그 성격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름지기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인 바, 동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거나 국내의 여타 산업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산업피해구제법’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치 못하고 있는데, 동 사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2.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1) 운영현황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는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3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의 제·개정 건수는 22건, 하위 시행령과 규칙을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은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다.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상세는 채욱,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210-236.

이하 USITC)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US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 주로 상무성에서 산출한 덤핑마진과 상계관세마진을 가지고 국내산업이 상대국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업무와,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제337조에 의거 수입품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피해조사, 의회 및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 이하 'USTR') 요청이 있는 경우 무역쟁점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³³⁾

미국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은, 첫째 관세법 제731조에 근거한 반덤핑관세제도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청원 또는 상무부 발의로 제소될 수 있고, 덤핑마진³⁴⁾은 상무부에서 산업피해판정은 USITC에서 담당한다.³⁵⁾

둘째 관세법 제701조에 의한 상계관세제도에 있어 제소요건은 반덤핑관세제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정도는 상무부, 이에 대한 피해판정은 USITC에서 담당한다.³⁶⁾

셋째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201조에 기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해당 업계의 청원서가 제출되거나, 대통령 또는 USTR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하원 세입위원회(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또는 상원 재무위원회(the committee of finance)의 결의 내지 USITC 발의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다.³⁷⁾

넷째 관세법 337조에 의한 불공정 수입조사제도는 특허권 침해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수입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섯째 기타 불공정 무역제제조치에 관해서는 통상법 제301조에 의하여 정부 또는 업계청원으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 및 관행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만약 교역 상대국과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33) 「www.sice.oas.org/dispute/gatt/87tar337.asp」 .

34)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으로써 비교방식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 개별 상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

35) 「www.uchastings.edu/site_files/facultywebs/paul/USsection731dumping.pdf」 .

36) 「www.uchastings.edu/site_files/facultywebs/paul/USsection701cvd.pdf」 .

37) 「www.usitc.gov/trade_remedy/trao/us201.htm」 .

경우 이에 상당한 보복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⁸⁾

2) 적용 유형

① 반덤핑관세제도

관할행정관청이 특정 등급 또는 종류의 외국물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USITC가 당해 물품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그 우려가 있어 동일산업분야가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고 판정을 내리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와는 별도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실제판매가격과 공정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³⁹⁾

②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의 부과요건은 관계당국이 협정당사국 또는 협정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 USITC가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 유관 산업분야가 실질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 등으로 공히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보조금에 상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 한다.

일반적으로 상계관세 적용에 따른 조사는 생산업자나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통례인데,⁴⁰⁾ 당해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는 차례로 피해의 예비판정, 보조금의 예비판정, 보조금의 최종판정, 피해의 최종판정의 4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38) 「www.osec.doc.gov/ogc/occic/301.html」.

39) 이 경우 덤팡(dumping)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로서 일반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개별 무역구제제도의 내용과 조문해석의 상세는 「www.moleg.go.kr」의 월간법 제 입법자료 참조.

40) 절차상으로 상계관세 심판절차는 반덤핑심판절차와 유사하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구제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의해 제공된 보조금의 액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입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산업에 대한 피해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③ 긴급수입제한조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대통령이나 USTR의 요청, 하원 세입위원회나 상원 재무위원회의 결의, USITC 자체의 발의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USITC는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물품이 미국 내의 동일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는 신속히 진행된다.

동 조치의 결과로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당해 분야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을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개 5년 이하 기간 동안 당해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외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내지 증액, 관세율 할당, 수입물품의 양적제한의 조정, 수입물품을 제한하는 협정체결 내지 이상의 조치를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④ 불공정 수입조사제도

외국물품이 미국에 수입·판매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행위가 개입되어 미국 내 유관산업분야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당해 분야의 개업을 방해하거나, 미국의 무역과 상업을 제한·독점하거나, 그 경향이 있을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더불어 USITC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여타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⁴¹⁾ 국내산업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수입물품이 이러한 분야를 도산시키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경우 USITC에 수입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경

41)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통상법 제301조, 상계관세법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외국정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그 대상을 달리 한다. 동 조의 절차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곧 금지되는 정화한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조항은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 반독점법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이를테면 특히·상표·저작권에 대한 권리침해를 포함하며, 독점기업에 의한 무차별 판매 등과 같은 독점금지법위반이나 허위 원산지표시 및 타인의 상업포장 또는 영업비밀의 도용·남용 및 허위광고와 같은 부당행위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동 조는 주로 미국내 무체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미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것이 주류이나, 최근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고도의 기술물품에 대한 수입제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쟁방법과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모든 수입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⁴²⁾

한편 동 조에 의거한 제소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미국 특허의 침해 또는 사칭통용(passing off)⁴³⁾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임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⑤ 불공정 무역제재조치

동 조치는 제반 무역협정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무역협정 상 미국이 향유하는 혜택을 방해하는 경우,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미국시장에 부담을 지우거나 제한하는 경우 대통령은 무역협정상 미국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다.

조치의 내용은 우선 어떠한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당해 외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해 물품과 용역이 이상의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과 무역협정상 양허사항의 적용을 정지·철회·금지하거나, 그 시행을 억제하거나, 당해 외국의 서비스에 대하여 관세 또는 기타의 수입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특별히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외무역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관행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미수출을 불공정하게 지원하는 외국의 무역관행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음과⁴⁴⁾ 미국의 이해관계인이나 이해 기업이 USTR을 통해 미국정부로 하여금 국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42) 나종갑, “미국관세법상 배제명령제도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75호, 법무부, 2007, p.49

43) 사칭통용(passing off)이라 함은 예컨대 공중일반이 당해 의장도안을 미국 물품의 표시(source)로 혼동하는 경우와 수입물품의 경우 비기능적 도안이나 상표의 도용을 등을 말한다.

44)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서 ‘무역’이라 함은 일반적 무역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 무역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와 직접투자는 물론 은행·보험·운송통신·데이터 처리·소매·도매·광고·회계·건설·디자인·경영자문·부동산·교육 및 관광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IV. 한·미 FTA 무역구제조항의 구성과 평가

1. 배경과 구성

1) 협상쟁점과 고려사항

한·미 양국은 2005년 02월 제1차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여 FTA 추진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논의를 시발로, 2007년 04월 KORUS-FTA가 타결되기 직전까지 무역구제 분야에 관한 협상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총 8차에 걸친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간 무역구제의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우선 반덤핑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설령 포함시킬 경우라면 WTO 협정에 견주어 어느 수준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둘째 WTO 협정에 비추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어떠한 조건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셋째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자국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당시 우리나라가 KORUS-FTA 협상에 있어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첫째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그간 대미수출에 있어 크나큰 장애로 여기고 있었던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조치를 어떠한 수준으로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던 바, 이를 위해 우리 측은 제로잉(zeroing)⁴⁵⁾금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⁴⁶⁾ 비누적(non-cumulation)⁴⁷⁾ 등을 제안하였다.

45) 덤픽마진 산정 시 우선 각 물품모델별로 덤픽마진을 계산한 뒤 전체물품을 위한 덤픽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픽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픽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픽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제로잉에 관한 상세는 김희상, "제로잉(zeroing)에 대한 WTO 분쟁해결결과 및 DDA 규범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pp.36-55., 채형복,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픽마진 산정방식("제로잉")의 법적문제", 「무역상무학회지」 제3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pp. 265 -266.

46)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픽마진과 피해마진 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다.

둘째 WTO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양국간 어떤 조건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이를테면 만약 동 조치의 상호간 적용을 배제할 경우 우리기업이 미국 시장 내에서 상대적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반면, 동 조치의 발동력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보다 동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성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형평상의 고려였다.

셋째 WTO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 FTA 체결 이후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동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아울러 기술규정 및 표준 등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및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⁴⁸⁾에 대한 사항 등이었다.⁴⁹⁾

2) 구성체계

KORUS-FTA는 제10장에서 무역구제(trade remedi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체계는 우선 제1절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에 대하여 동 조치의 적용(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제10.1조)과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0.2조),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제10.3조), 보상(compensation, 제10.4조),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actions, 제10.5조), 정의(definitions, 제10.6조) 및 제2절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제10.7조), 제3절에서 무역구제위원회(committee on trade remedies, 제10.8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47)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8)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제품·공정·서비스·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검사·인증·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평가행위를 말하여 이 경우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 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시험 및 검사·평가·검증 및 적합보증·등록·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 49) 한·미 FTA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관한 상세는 김현종, “한·미 FTA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다”, 「통상법률」, 통권 제75호, 법무부, 2007, pp.6~9.

2. 주요 골자

1)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① 적용요건(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KORUS-FTA의 결과로서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 대적인 경우 또는 국내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타 방 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이 당사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동 협정에 규정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인하 정지,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⁵⁰⁾ 계절적으로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 관세율의 인상⁵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한편 동 조치의 조건 및 제한에 관해서는 우선 당사국은 당해 조사를 개시 할 때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당해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 하기 이전 최대한 조기에 타방 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아울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일체의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다만 필요한 한도 및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및 동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1회를 초과한 동일물품인 경우에 는 동 조치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③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지연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타방

50) 다만 동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물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most-favoured nation applied rate) 및 동 협정 발효일 직전 일에 발효 중인 당해 물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이어야 함을 제한요건으로 두고 있다.

51) 다만 각 계절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 중인 당해 물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및 동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 중인 당해 물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의 수입이 KORUS-FTA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고, 당해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사안의 예비판정에 따라 동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당사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인 경우 당사국은 수출·입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해야 한다고 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동 조치의 적용에 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표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였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당사국은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 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⁵²⁾

④ 보상(compensation)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이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동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동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동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물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동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제한규정을 마련하였다.⁵³⁾

⑤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양국은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해 협정에 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상호 그 어떠한 추가적 권리나 의무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어떠한 당사국도 동 조치와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른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

52) 다만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3) 보상을 제공할 조치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타방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종료된다.

도록 하는 단서를 마련하였다.⁵⁴⁾

2) 반덤핑 및 상계관세(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① 통보 및 협의(notification and consultations)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한 서류를 갖추어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합치되는 신청접수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신청에 관한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상계관세에 대한 신청 또한 이와 같다.

② 합의사항(undertakings)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에는 가격 내지 물량에 대한 약속을 타방 당사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취지에서 당해 절차에 관한 서면정보를 적정기간을 두고 타방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관련 당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당사국이 당해 덤플링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당사국의 가격 약속제안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당사국이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당사국은 마찬가지로 자국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또는 물량에 대한 약속제안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 및 당사국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무역구제위원회(committee on trade remedies)

54) KORUS-FTA상 용어의 정의는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 한·미 FTA 용어집, 2006.

양국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해 두고 있다.

우선 동 위원회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무역구제에 관한 법·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KORUS-FTA 제10장에 대한 이행을 감독하며, 무역구제 사안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여야 하며, 무역구제에 관련된 국제적 문제와 양 당사국 관행 및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정례적 논의의장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3. 평가

상술한 KORUS-FTA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 무역구제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의 사전통지, 가격·물량 등에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조항을 미국이 위반했다고 판단되더라도 분쟁해결 절차의 제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미국에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대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한 것과 동시에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농업과 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농산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을 10년 내에 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도록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당초 협상과정에서 전체피해액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제로잉금지와 비합산조치를 포기한 대신에 그다지 법적 효력이 미약한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한 것과,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시 동시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향후 무역구제에 대한 양국의 분쟁에 있어 비교열위의 대응수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해 재발동 금지에 대한 합의는 예상했던 대로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

미 수출규모가 큰 상황에서 우리보다는 미국의 발동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이 예측되는 바, 이에 재발동 금지에 관한 합의사항은 우리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당해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 WTO에서 규정한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음은 이중적 보호장치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유의가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FTA는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으로 설명되는데, 최근 FTA의 협상대상은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고는 FTA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무역구제에 대한 한·미간 제도 및 KORUS-FTA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양국간 무역구제제도 및 KORUS-FTA 제10장을 중심으로 주요 사안 내지 당해 조문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긴급수입제한조치·반덤핑조치·보조금 상계조치 등과 같은 무역구제제도는 FTA의 확대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FTA의 차별적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역외국의 피해 및 개별 FTA마다 다른 무역구제조치의 요건과 조치유형 등이 다자주의 규범과 상호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물품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그 방법은 수량규제·수입가격규제·행정규제 등이다. 반덤핑조치는 덤플링수출에 대하여 특별관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덤플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나, 동 조치의 운용상 덤플инг판정여부가 어렵고 또한 국내산업의 피해발생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국에 의한 자의적 운영이 문제시 되고 있다. 상계관세부과는 보조금에 의한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의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명확한 원칙하에서의 일률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어 동 조치 또한 반덤핑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의 수

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내재한다.

한편 산업피해구제법은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법률로서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제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WTO 협정에 근거하여 일원화 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의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외에 여타 지원조치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 유형에는 이하 미국과 마찬가지로 덤픽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등이다. FTA 특별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에 있어 FTA와 관련된 국내법은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등인데, 다만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법, 투자 관련법, 물류 관련법, 대안적 분쟁해결 관련법, 법률서비스 관련법 등의 제·개정 내지 통일화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 미국 무역구제제도는 USITC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동기관은 덤픽 또는 보조금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와 지적재산권 피해조사 및 무역쟁점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제도의 유형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다만 불공정 무역제제조치에 있어 통상법 제301조에 의해 대외무역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관행을 대상으로 대미수출을 불공정하게 지원하는 외국의 무역관행에의 적용과, 이해당사자가 USTR을 통해 미국정부로 하여금 국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무역구제에 관한 KORUS-FTA는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주된 논점은 순기능적 시각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가격·물량 등에의 합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재발동 금지,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 등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역기능적인 시각에서 분쟁해결절차상 제소 대상에서 제외,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국 지정 시 미국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점, 동 조치의 특별대상인 물품·농산물에 대하여 당해 조치를 10년 내 1회 이상 발동할 수 없도록 한 점, 제로잉금지와 비합산조치가 누락된 점,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시 상호 적용을 배제하고 사전통지 및 협의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향후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구갑우,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 김관원, “반덤핑 폐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제12집, 한국 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김명아,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 대응 방안”, 「외법논집」, 제26 집,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 김현종, “왜 FTA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_____, “한·미 FTA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다”, 「통상법률」, 통권 제75호, 법무부, 2007.
- 김희상, “제로잉(zeroing)에 대한 WTO 분쟁해결결과 및 DDA 규범협상에서 의 논의 동향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 나종갑, “미국관세법상 배제명령제도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75호, 법무부, 2007.
-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 한·미 FTA 용어집, 2006.
- 이충배 외, “동북아지역 국가의 무역구제제도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 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5.
-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 채 육,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채형복,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플링마진 산정방식 (‘제로잉’)의 법적문제”, 「무역상무학회지」 제3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 Devuyst, Y. and Serdarevic A.,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 Bridging the constitutional credibility gap”,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l Law, Vol. 18, 2007.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2008.

관세법(2008.02.29. 법률8860호)

대외무역법(2008.02.29. 법률8852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2008.03.21. 법률 8933호)

GATT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GATT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VI, XX
III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ariff Act of 1930

Trade Act of 1974

GATT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WTO Agreement on safeguards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ww.ktc.go.kr

www.marxists.org/history/capitalism/gatt/ch19.htm

www.marxists.org/history/capitalism/gatt/ch24.htm

www.moleg.go.kr

www.osec.doc.gov/ogc/occic/301.html

www.sice.oas.org/dispute/gatt/87tar337.asp

www.uchastings.edu/site_files/facultywebs/paul/USsection701cvd.pdf

www.uchastings.edu/site_files/facultywebs/paul/USsection731dumping.pdf

www.usitc.gov/trade_remedy/trao/us201.htm

www.worldtradelaw.net/uragreements/gats.pdf

www.wto.org

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4-scm.pdf

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gatt1994_e.htm

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safeguards_01_e.

ABSTRACT

A Study on the Valuation for Trade Remedies System and KORUS-FTA Chapter 10 between the KOREA and U.S.

Oh, Hyon Sok

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Key Words : KORUS-FTA, Safeguard Measures, Provisional
Measures,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